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1-77호
2021. 9. 30.(목)

차 례

조 례(17)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39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40호) 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41호) 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42호) 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43호) 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44호) 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45호) 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조례 제1546호) 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47호) 25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조례 제1548호) 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49호) 3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50호) 37
-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551호) · 4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552호) 5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조례 제1553호) · 5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조례 제1554호) 5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555호) 65

규 칙(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26호) 68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규칙 제927호) 70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62호) 85

공 고(1)

-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공고 제2021-976호) 87

공 람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3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한다)제104조제2항”을 “한다) 제10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
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 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추가함(제5조제4호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4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57명”을 “76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40명”을 “74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62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759					
	3급	1	1				
	4급	5	4		1		
	5급	46	26	3	4	1	12
	6급 이하	707					
별정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2021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동행정복지센터 정원 증원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함(제1조 및 제2조).
- 나.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57명”에서 “762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40”명에서 “745명”으로 조정함(제2조 및 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4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율에 관한 특례사항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고 2021년부터는 법령에서 별도로 경감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규정을 삭제함(제2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4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정비함(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4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및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원 처리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4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아목) 중 “제5조의2”를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별표 중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자목1) 중 변경신고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 명확화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1. 4. 6. 시행)에 따른 표준수수료 조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에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감면대상에 포함함(제8조).
- 나. 개별법령에서 징수 근거가 삭제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종류를 삭제함(별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수수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4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행정정보의 공표 등)”을“(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 사전공표 목록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행정지원국장과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 중 공개대상의 전자파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제3항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12.22.개정, 2021.12.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을 정비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심의회 기능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령 명칭에 맞게 조 제목을 정비함(제3조).
- 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제4조).
- 다. 상위 법령에서 심의회 위촉 위원의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의 조문을 정비함(제5조).
- 라.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조정함(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4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비”란 대전시내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청소년요금을 말한다.
2. “저소득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정의한 수급자 가정을 말한다.
3.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교통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과 실태 파악
2. 지원액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채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학생 중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통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자격) 교통비는 지원대상이 되는 고등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고등학교 입학 및 전학 시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교통비 지급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2. 그 밖에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나.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 지원 자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다.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4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9세 미만”을 “24세 이하”로 한다.

제3조 중 “대덕구”를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

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대덕구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대덕구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대덕구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법률지원 아동·청소년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민간위탁 근거마련 등 법률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신설).
- 나. 법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함(제8조 신설).
- 다. 비밀준수 의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4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국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행한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그 밖에 학교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
 3.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
- 제11조(실비지급 등)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한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나. 환경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다. 학교, 사회단체 등,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라.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를 규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4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구청장은 공중

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으로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안심가림판”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제4호 신설).
- 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로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5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제25조제1항제2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조제5호부터 제11호

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6호) 중 “(PP포대인 특수규격봉투를 포함한다. 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를 “(특수규격봉투 PP마대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8호) 중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대행업체”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을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한다”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폐기물
2. 대형폐기물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4. 가정용 연탄재

제10조제1항 본문 중 “한다)가”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생활환경보전상”을 “생활환경 보전상”으로 한다.

- 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나 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때에 불법 제작, 유통방지,”를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pp포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을 “(PP마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으로, “(pp포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를 “(PP마대 포함)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현금으로 환불”을 “환불”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6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법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하단의 주) 5) 중 “pp포대”를 “PP마대”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6]

종량제봉투판매소 행정처분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의 산정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위반항목별 조치기준

위 반 항 목	조 치 기 준			비 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양수	취소			
2)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 미확보	시정조치	취소		
3) 봉투의 용량별 가격표 및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 미부착	시정조치	시정조치	취소	
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	취소			고발
5) 모조종량제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를 발견 후 미신고	시정조치	취소		
6) 부득이한 사유 없이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환불요청 거부	시정조치	취소		
7) 그 밖의 행정지도사항 위반				
가) 민원에 대한 불친절 행위	시정조치	시정조치	취소	
나)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미이행				
· 중요한 사항 미이행	시정조치	취소		
· 경미한 사항 미이행	시정조치	시정조치	취소	

- 비고 1) 4)호의 위반행위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형법」 제229조에 따라 고발을 병행함
- 2) 7)호나)목의 “중요한 사항”이란 발송된 공문에 “중요한 사항”이 표시된 경우에 한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배출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제명을 변경함(제명).
- 나. 상위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를 그대로 정의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제2조).
- 다. 분리·보관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제4조).
- 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0조).
- 마. 상위 법령 근거 조항 및 지침 명칭을 현행화 함(제3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 바.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 중 환불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제21조제1항제6호).
- 사. 종량제봉투판매소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제23조제1항 및 별표 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5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는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계획·실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관련 정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이행목표 설정·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실·과·단장(사업소 포함) 및 복합문화센터장
2.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3. 탄소·기후 위기·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4. 구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과학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우리 구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 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임기, 위원해촉,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5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에 관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과 부합한 드론산업의 경제성장 동력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협력사업, 드론의 활용사업,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다.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드론체험·교육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함(제9조).
- 라. 드론산업 육성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5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르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무게가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킥

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 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
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범구역 조성)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
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
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 및
이용자와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제3조).
-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
조 및 제6조).
-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및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및 제8조)
- 마.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5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친환경건축물로서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건분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

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 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 나. 기존 평가 참여도
- 다. 법규 준수 여부
- 라.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 마.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

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2019. 4. 30.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4. 28. 제정)이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을 정함(제2조).
- 나.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긴급점검 대상을 정함(제3조).
-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규정함(제4조).
- 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제5조).
- 마.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제6조).
- 바.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사.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55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독서 진흥)”을“(독서문화진흥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독서 진흥”을 “독서문화진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로, “개최하거나”를 “개최하여야 하며,”로, “이를”을 “독서 관련 행사를”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책 읽는 도시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

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등
 2. 독서문화 유공자 시상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축제 등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과 통일되게 용어를 정비하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독서관련 행사 및 사업 시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독서분위기 조성으로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령과 통일되게 용어를 정비하고 독서관련 행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제1항·제2항).
- 나. 독서문화진흥 및 책 읽는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와 이에 따른 구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제3항·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2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2021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함(제1조).
-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 총 정원 : 정원 757명 → 762명(5명 증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2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

레」(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각시설
2. 사료화·퇴비화 시설
3. 압축·파쇄·분쇄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리시설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배출장소를 뜻하고, 용기는 구청장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제작 설치한 생활폐기물 수거용기를 말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한 후,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동장에게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의 대형폐기물은 조례 제10조제1항의 정해진 배출요령을 따라야 한다.

제4조(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가격별로 2,000원권, 3,000원권, 4,000원권, 5,000원권, 6,000원권, 7,000원권, 8,000원권, 10,000원권, 15,000원권으로 한다.

②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규격은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로

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③ 조례 제28조제1항에 의한 대형폐기물 스티커 환불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종량제 봉투의 색상) 종량제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봉투는 연두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매년 분기별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량제 봉투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주민의 불편이 있을 때에는 긴급 제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인쇄 원판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제조업체에서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제작하는 동안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업무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가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구청장 또는 공급 대행자에게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을 신청한다.

② 구청장 또는 공급 대행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한 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요원에게 가로 청소작업에 필요한 적정량의 공공용 봉투를 공급한다. 또한, 골목길 등의 특별 대청소를 실시할 경우에 동장이 신청하면 공공용 봉투를 공급한다.

④ 구청장과 동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공공용 봉투의 수불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대행자 또는 지정판매소 공급금액으로 부과 및 징수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①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 대상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1세대 당 4인 가족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자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유리한 감면사유를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용봉투 수불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에 지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7호서식의 명부를 작성하여 감면 대상자의 전·출입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는 대덕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⑤ 조례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경우 봉사단체 관리 부서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지급요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에 대한 배부는 지급요청한 부서에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방법 홍보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공고
4.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불법소각행위, 정해진 일정·장소·용기사용 미준수 행위, 분리 보관·배출 위반행위, 종량제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5. 특별 대청소의 날 지정 및 실시

6.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4조제1항 관련)

NO : (누계연번)

폐 기 물 부 착 용 판매업소 : ()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액 :	배 출 자 보 관 용 판매업소 : ()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금액 :
○ 배 출 자 : ○ 배 출 일 : 년 월 일 ○ 배 출 장 소 :	○ 배 출 자 : ○ 배 출 일 : 년 월 일 ○ 배 출 장 소 :
배출품목	배출품목
※ 배출품목에 ○표 하십시오	※ 배출품목에 ○표 하십시오
※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반드시 구청 기후환경과 (608-6831~7)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신고 하여 주십시오. 오정동(608-5601), 대화동(608-5602), 회덕동(608-5603) 비래동(608-5604), 송촌동(608-5605), 중리동(608-5606) 법 1동(608-5607), 법 2동(608-5608), 신탄진동(608-5609) 석봉동(608-5610), 덕암동(608-5611), 옥상동(608-5612)	※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반드시 구청 기후환경과 (608-6831~7)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신고 하여 주십시오. 오정동(608-5601), 대화동(608-5602), 회덕동(608-5603) 비래동(608-5604), 송촌동(608-5605), 중리동(608-5606) 법 1동(608-5607), 법 2동(608-5608), 신탄진동(608-5609) 석봉동(608-5610), 덕암동(608-5611), 옥상동(608-5612)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인] (인영인쇄)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인] (인영인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대장

대형폐기물스티커 환불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일시	신 고 자		배출 폐기물		배 출 예 정 일	배출장소
		주 소	성 명 (연락처)	품 명	규 격		

(신청접수번호 :)

배 출 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환불받을 계좌	은 행		예 금 주	
	계좌번호			
배출 신고 폐기물	품명, 용량, 매수를 기재			
반환신청 스티커	구입일자	종 류	매 수	금 액

○ 환불사유 :

첨부 : 대형폐기물처리비 납입필증 원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신청서

구분	수량(매)	공급단가(원)	금액	비고
일반용 봉투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대형폐기물스티커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			
	15,000원			
계				

위와 같이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대덕구청장 귀하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월 일	적 요	납 품			공 급			잔 매			결재	
		계	50ℓ	100ℓ	계	50ℓ	100ℓ	계	50ℓ	100ℓ	팀장	동장
/												
/												
/												
/												
/												
/												
/												
/												
/												
/												
/												
/												
/												
/												
/												
/												
/												
/												

257mm² × 364mm²

(인쇄용지 2급 60g / m²)

[별지 제5호서식]

일반용봉투 수불대장

(단위 : 매)

월일	적요	납 품										공 급										잔 매										결재									
		계	1 ℓ	2 ℓ	3 ℓ	5 ℓ	10 ℓ	20 ℓ	30 ℓ	50 ℓ	75 ℓ	100 ℓ	계	1 ℓ	2 ℓ	3 ℓ	5 ℓ	10 ℓ	20 ℓ	30 ℓ	50 ℓ	75 ℓ	100 ℓ	계	1 ℓ	2 ℓ	3 ℓ	5 ℓ	10 ℓ	20 ℓ	30 ℓ	50 ℓ	75 ℓ	100 ℓ	팀장	동장					

64mm × 267mm (인쇄용지 2급 60g / m²)

[별지 제6호서식]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연번	지급 일자	지급 대상		세대원수	봉투 지급 내역(매)						지급 사유	수령인		
		주소	성명		계	5 ℓ	10 ℓ	20 ℓ	50 ℓ	100 ℓ				

364mm × 267mm (인쇄용지 2급 60g / m²)

감면대상자 명부

연 번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세대원수	감면사유	비고

257mm² × 364mm²(인쇄용지 2급 60g / m²)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체계정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조례에 맞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대상을 정함(제2조).
- 다.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정함(제3조).
- 라.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마.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종량제 봉투의 제작·공급·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바.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9조까지)
- 사.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정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6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사업소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4항 관련)”을 “사업소 직렬별 정원(제2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별표 2·별표 4·별표 5, 별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2021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부서)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 ▶ 본청 : 500명(정원 변동없음) / 직급·직렬 조정
- ▶ 의회사무과 : 17명(정원 변동없음) / 직급·직렬 조정
- ▶ 사업소 : 30명(정원 변동없음) / 직급·직렬 조정
- ▶ 동 : 155명 → 160명(5명 증원)

이의신청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38조 규정에 의거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가. 공시기준일: 2021년 6월 1일
- 나. 대상: 대전 대덕구 홍도로 73번길 46(오정동 740-15)외 32호)
-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 라. 열람장소: 대덕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가. 신청기간: 2021. 9. 30. ~ 10. 29.
- 나. 신청인: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다. 신청방법: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대덕구청 세무과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제출
- 라. 결과통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 끝.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21.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
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2021. 6. 1. 기준으로 주택특성 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
원 2인의 검증으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
도록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
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
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대덕구청 세무과 및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kras.go.kr>)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